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1. 9. 22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9월 6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9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1. 9. 1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오승환)

가. 제안이유

- 『유통산업발전법』이 2011.6.30.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·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(안 제12조)
 -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제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(기존 500미터)
 - 다만,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산업보존구역이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포함 할 경우 구청장은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- ※ 유효기간 : 2015.11.23일까지 유효(기존 '13.11.23까지)
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이 현 영)

- 이 조례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2011. 6. 30일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1항에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기존 500미터 이내를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또한 같은 조항 후단에 “다만,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포함 할 경우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”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.
-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기존 3년인 2013.11.23에서 5년인 2015. 11. 23일 까지로 연장함.
- 이 조례안은 지난 2011년 2월에 의결된 조례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인 현행 500미터 이내는 그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유통상점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 짐.
- 인접 자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우리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필요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서울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신설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 짐.
-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은 대규모유통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한 것으로 보여짐.
- 종합적으로 보아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과 이에 따른 서울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일부개정한 것이며 그 밖의 부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개정으로 법 체제 및 자구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73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9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『유통산업발전법』이 2011.6.30.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·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(안 제12조)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로부터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**1킬로미터**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(기존 500미터)

- 다만,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산업보존구역이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포함할 경우 구청장은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나. 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정비 기준” 규정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유통산업발전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- 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조표 : 별첨
- (2) 입법예고(2011.7.28 ~ 8.17,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부패영향평가 : 검토필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”
를 “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제2호 중 “수퍼마켓”을 “슈퍼마켓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중재 할”을 “중재할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00미터”를 “1킬로미터”로 하고, 같은 항
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산업보존구역이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
을 일부포함할 경우 구청장은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
있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등록에 붙임에 있어”를 “등록에 붙일 경우,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범위 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“소상공인”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「<u>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</u>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7. ~ 9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「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</u>」 제2조제2호-----</p> <p>-----.</p> <p>7. ~ 9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유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위원은 영등포구 안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전통시장, <u>슈퍼마켓</u>, 상가 등 중소 유통기업 대표</p> <p>3. ~ 7. (생략)</p> <p>④、⑤ (생략)</p>	<p>제8조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슈퍼마켓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、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협의회의 업무) 협의회는 대형 유통기업, 중소유통기업, 소상공인간</p>	<p>제10조(협의회의 업무) -----</p> <p>-----</p>

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 할 수 있다.

1. ~ 11. (생략)

제 12조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 ①

구청장은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 〈후단신설〉

1. 2. (생략)

② ③ (생략)

제 15조(조건 등의 부과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.

중재할 --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제 12조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 ①

1킬로미터-----

----- . 다만,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포함할 경우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③ (현행과 같음)

제 15조(조건 등의 부과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등록에 붙임 경우, -----

제 16조 (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

지원) 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기술적·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 16조 (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

지원) ① -----

-----범
위에서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